

한국관광공사-한국콘텐츠진흥원 업 무 협 약 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.)는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광-콘텐츠 산업의 시너지 창출과 신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 적) 본 협약은 관광-콘텐츠의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,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 및 신한류 활성화를 도모하고, 관광-콘텐츠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업무협약의 범위) 본 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업무협력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신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
- ② 관광-콘텐츠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
- ③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
- ④ 기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

제 3 조 (업무협력 추진방법) ① 양 기관은 상호 간의 신의 성실에 따라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상호 간의 업무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.

②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 합의서나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.

③ 양 기관은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제 4 조 (협약기간) 이 협약서는 각 기관 대표자의 서명을 받는 즉시 유효하며, 유효기간은 2019년 10월 18일까지로 한다. 단 협약종료일 30일 전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 의무) 각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해 인지한 제반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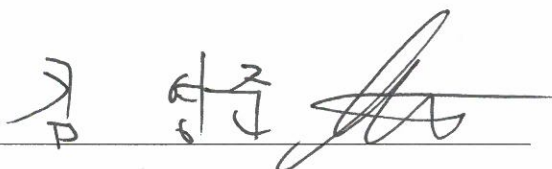
제 6 조 (법적 구속력) 본 협약은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, 제5조(비밀유지의무), 제7조(수정 및 양도)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 7 조 (수정 및 양도) ① 본 협약은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.

② 본 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,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, 담보설정 기타 처분할 수 없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,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에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0월 19일



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

김 영 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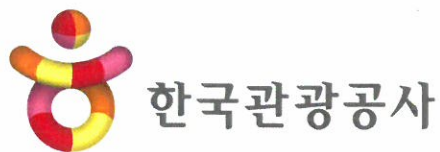


한국관광공사 사장

안 영 배



Kocca
한국콘텐츠진흥원



한국관광공사